

서울특별시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제 출 자: 서울특별시
- 나. 의안번호: 제3089호
- 다. 제출일자: 2022. 1. 21.
- 라. 회부일자: 2022. 1. 25.

2. 제 안 사 유

- 양천주민편익시설은 자원회수시설로부터 환경상 직·간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의 복지 및 생활향상을 도모하며,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주민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중이며, 2022. 7. 5.자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위탁사무명: 양천주민편익시설 운영

나. 위탁기간: 3년('22. 7. 6. ~ '25. 7. 5.)

다. 민간위탁 필요성

- 주변영향지역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체육 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외부기관에 위탁 운영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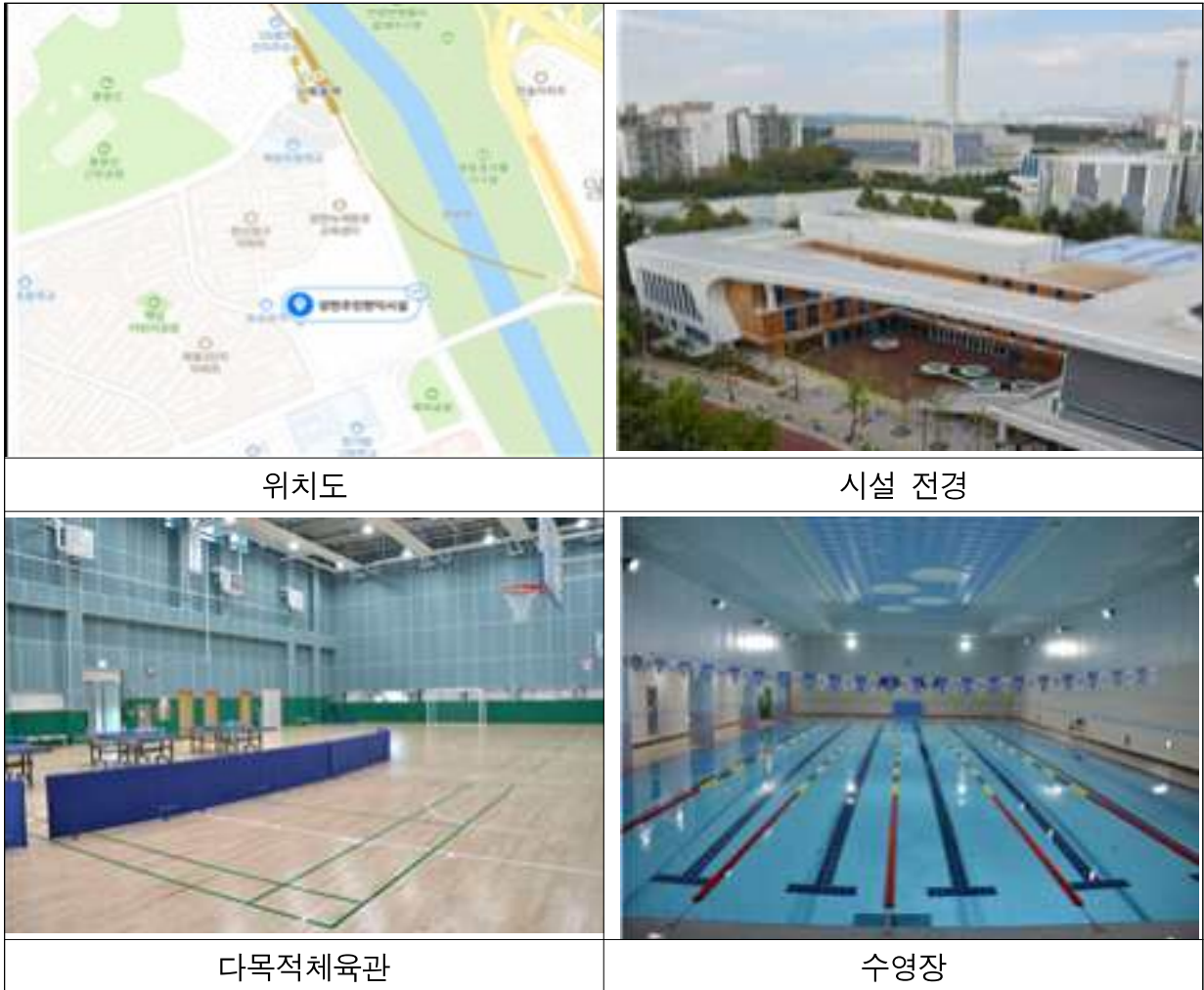
라. 위탁사무 내용

- 편익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
- 편익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일반사무의 처리
- 부대시설(주차장 등) 설치 및 관리
- 주민이용자의 소통체계구축 및 주변영향지역의 주민편익증진
- 기타 편익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협의하여 정하는 사무

마. 시설 개요

- 시설명: 양천주민편익시설
- 소재지: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0
- 규 모: 지하3층/지상3층
- 연면적: 5,841.52 m^2
- 주요시설: 수영장, 골프연습실, 헬스장, 독서실 등
- 준공년월: 1999. 4.(2016. 7. 리모델링)
- 이용대상: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등

○ 주요 시설 사진



바. 수탁자 선정 방식: 재위탁(공개모집)

※ 2022년 제1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22. 1. 14.)

사. 소요예산: 운영비 지원 없음(시설이용료 징수 수익금으로 운영)

아. 기대효과

- 전문성을 갖춘 외부기관의 시설 운영을 통한 효율 증대 및 서비스 품질 향상
- 민간 운영을 통해 체육시설 등 주민이용 확대 및 운영 활성화 기대
- 서울시 별도 예산지원 없이 운영하여 예산 절감 효과 기대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①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8조(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해당시설이 입지한 자치구에서 설립한 공기업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②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양천주민편익시설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문화 체육시설
----------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1.~2. (생략)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생략)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인한 재위탁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검토 의견

□ 양천주민편익시설 운영 현황

- 서울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1999년부터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해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

동 시설은 연면적 5,842㎡(지하 3층과 지상 3층) 규모로 수영장, 헬스장, 골프연습장 및 독서실 등으로 활용되어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재)서울 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이 위탁 계약을 통해 제7차에 거쳐 시에서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 자립형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들은 20~40% 할인된 금액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양천주민편익시설 일반 현황>

시설명	양천주민편익시설
위치	양천구 목동서로 20
개관일	'99. 09. 01.
수탁기관	(재)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서울YMCA)
민간위탁유형	자립형
위탁기간	'19.07.06.~'22.07.05.
규모(연면적)	5,841.52㎡(지하 3, 지상 3)
용도	수영장, 헬스장, 골프연습장, 독서실 등
주변영향지역 주민이용료 할인율	20 ~ 40%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 양천주민편익시설 시민 이용현황을 보면, 2019년 4만 2천여 명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는 전년 대비 61% 감소한 1만 6천여 명에 불과했고 2021년의 경우도 소폭 증가하기는 했지만,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50% 수준에 머물러 있음.

코로나19에 따른 이용객 감소, 즉 수입 감소는 자립형으로 운영 중인 동 시설의 운영수지에 악영향을 미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경 편성을 통해 2020년도 운영비(인건비 등) 부족분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1년도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도 2022년도 추경 편성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임.

<최근 3년간 양천주민편익시설 이용 현황>

구분	계	영향지역		기타지역	
		일반	청소년 등	일반	청소년 등
2019년	42,442	22,570	5,688	12,654	1,530
2020년	16,470	10,396	2,139	3,651	284
2021년	22,794	13,218	3,858	5,076	642

<최근 3년간 양천주민편익시설 운영수지>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수입	1,974,794	669,890	1,031,884
지출	1,973,065	1,370,717	1,483,468
시 지원액		548,162	353,000
민간위탁금		279,611	353,000
민간위탁사업비		268,551	-
기타		-	-
기타 보조금		350,000	-

※ 민간위탁금: 코로나19로 휴관 및 시설운영 제한에 따른 손실보전금 긴급 지원(추경)

※ 민간위탁사업비: 시설 기능보강 및 유지보수 관련

※ 기타 보조금: 서울 YMCA 법인 차입금(추후 상환 예정)

□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내용**

- 본 동의안은 양천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1)에 그

1) 제8조(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해당시설이 입지한 자치구에서 설립한 공기업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양천주민편익시설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문화 체육시설
----------	----------------------------------

근거를 두고 있음. 이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와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2. (생략)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생략)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8. (생략)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4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사항으로 위탁사무명, 추진근거 및 필요성, 위탁사무 내용, 위탁시설 개요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에는 이에 대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4>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① 시장이 제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민간위탁 추진 절차

- 양천주민편익시설 운영 본 주민지원사업은 2022년 1월에 추진계획이 수립된 후²⁾, 이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 결과, 적정³⁾으로 결론지은 바 있음.
- 민간위탁 추진 절차 중 재위탁(공모)사업의 경우, 사전조사 →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개최 → 시의회 보고(동의) → 시의회 의결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본 계획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이러한 추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

<2022년 제1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부서명	위탁사무명	유형	위탁기간	심의결과	비고
자원순환과	양천주민편익시설	자립형/ 재위탁(공모)	3년	적정	

□ 종합 의견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과 내용,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추진 절차 등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자원순환과-86, '22.1.4.)

3) 2022년 제1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자원순환과)(조직담당관-596, '22.1.14.)